

제24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결과

일시 /장소	○ 일 시: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 장 소: - (서면심의)				작성자	운영지원과 정보공개담당자		
					심의요청부서	OOOOOO과		
참석위원	심사위원	직 위	성 명	확 인	심사위원	직 위	성 명	확 인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OOO		위원	외부위원 (교수)	OOO	
	위원	청렴정책 총괄과장	OOO		위원	외부위원 (변호사)	OOO	
	위원	외부위원 (변호사)	OOO		위원	외부위원 (변호사)	OOO	
	위원	외부위원 (교수)	OOO					
심의방식	서면심의							
상정안건	제2026-68호	1. 최초 청구 및 결정사항 ○ 접수번호: 17046302 * 청 구 인 : ○○○(접수일: 2026. 7. 10.) * 청구내용 : 청구인이 신고한 사건 관련 피신고인 및 그 대리인이 제출한 답변서, 소명서, 의견서 등 일체 * 부서 결정사항 :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7호)						
		2. 이의신청 내용 * 이의신청 내용 : 청구인 본인이 신고자이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0조 등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고, 부분공개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함						
의견내용		3. 이의신청에 따른 부서 검토의견 * 검토의견: 기각(세부사유 안건자료 참조)						
		[기각] ○ 기각 의견 ○ 주요 의견 내용 - 청탁금지법 제15조 4항에 의하면 신고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신고자등(신고자와 신고자가 아님에도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안 됨.						

	신청인이 요청한 자료에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하여 협조자·관련자들의 증언, 그들이 제출한 자료, 그들을 조사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공개할 시 협조자·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유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함 - 내부 조사결과보고서 및 검토의견서는 조사 결과에 이르는 내부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향후 신고사건 조사업무 담당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 따라서 원처분을 유지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사항	○ 기각